

#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04호)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7. 1.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2024. 7. 4.

다. 상정·의결일자: 2024. 7. 17.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 2. 개정이유

2024년 고성군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소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화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안전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할 수 있도록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변경(안 제19조)

나.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10명으로 축소(안 제21조제1항)

다. 비상설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의 임기·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2조, 제23조)

라.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회의 소집 방법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변경(안 제26조제2항)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복지지원과-15606(2024. 4. 15.)호]: 검토의견 반영

조례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해당조항: 제17조제2항  <input type="checkbox"/> 해당조항: 제21조제3항	<input type="checkbox"/> 평가단 구성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라는 문구 추가 제안함  <input type="checkbox"/> 위원회의 구성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라는 문구 추가 제안함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평가단 구성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라는 문구 추가 및 위원회의 구성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라는 문구 추가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input type="checkbox"/> 제17조제2항 평가단 구성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라는 문구 추가 반영함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4-675호

가) 예고기간: 2024. 4. 11. ~ 2024. 5. 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의견

-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안 제21조~제23조, 제26조)
  -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고,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되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였음.
  -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 규정하였음.
-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검토의견 반영(안 제17조, 제21조제3항)

○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어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운영을 비상설화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없음

9. 심사결과: 2024. 7. 17.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